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21호 2023. 5. 4(목)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882호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남원시 조례 제1883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남원시 조례 제1884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1
- 남원시 조례 제1885호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13
- 남원시 조례 제1886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9
- 남원시 조례 제1887호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32
- 남원시 조례 제1888호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38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3-61호 남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45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3-963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1-14호선)결정(변경)(안)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47
- 남원시 공고 제2023-981호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50
- 남원시 공고 제2023-985호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61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5월 4일

남원시 조례 제 1882 호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3조 (생 략)</u></p>	<p><u>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 원)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남원시 포 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u>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5월 4일

남원시 조례 제 1883 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원시의회 의원

나. 대학교수·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 민간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계약내용”을 “계약 해제·해지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90일”을 “60일”로 한다.

6.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90일”을 “60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탁계약 해지)”를 “(위탁계약 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지”를 “해제 또는 해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지하는”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으로 한다.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22조제1항 본문 중 “90일”을 “6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 ----- ----- ----- ----- -----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생략)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u>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10명 ----- ----- 구성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u> <후단 신설>	③ ----- -- <u>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u>

현 행	개 정 안
<p>1. <u>남원시의회 의원</u></p> <p>2. <u>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u></p> <p>3. <u>민간위탁 전문가 및 실무경력자</u></p> <p>4. <u>관계공무원</u></p> <p>5. <u>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④ <u>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 <u>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u></p>	<p><u>이내로 한다.</u></p> <p>1. <u>관계공무원</u></p> <p>2. <u>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u></p> <p>가. <u>남원시의회 의원</u></p> <p>나. <u>대학교수·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 민간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u></p> <p>다. <u>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④ <u>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u></p> <p>⑤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있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u>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p> <p><u>⑨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2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12조(계약체결)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5. <u>계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u> <u><신 설></u></p> <p>6. 그 밖에 <u>위탁사무 수행을 위</u> <u>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사항</u></p> <p>②·③ (생 략)</p> <p>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 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u>90</u> <u>일</u>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p> <p>제13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 우 위탁기간 만료 <u>90일</u>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p> <p>② (생 략)</p> <p>제14조(<u>위탁계약 해지</u>)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u>해지</u>할 수 있다.</p> <p>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u>때</u></p>	<p>5. <u>계약 해제·해지 및</u> ---</p> <p>6. <u>지도·점검에 관한 사항</u></p> <p>7. ----- <u>시장</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60</u> <u>일</u>----- -----.</p> <p>제13조(재계약) ① ----- ----- ----- ----- <u>60일</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u>위탁계약 해제 등</u>) ① --- ----- ----- ----- <u>해제 또는 해지</u>----- -----.</p> <p>1. ----- ----- <u>경우</u></p>

현 행	개 정 안
<p>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신 설></p> <p><신 설></p> <p>3. 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p> <p>4. (생략)</p> <p>② (생략)</p> <p>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2조(운영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2. ----- ---- <u>경우</u></p> <p>3. <u>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u></p> <p>4. <u>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u></p> <p>5. ----- ----- <u>경우</u></p> <p>6.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해제 또는 해지하는</u> --- ----- ----- -----.</p> <p>제22조(운영성과평가) ① ----- ----- --- <u>60일</u>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5월 4일

남원시 조례 제 1884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제4호부터 제8호”를 “제5호부터 제9호”로 한다.

- 4.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관내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대관 사용료 징수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1. (생략)</p> <p>2.·3. 삭제</p> <p><u><신설></u></p> <p>4. ~ 8. (생략)</p> <p>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 ----- ----- -----</p> <p>1. (현행과 동일)</p> <p>4.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관내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p> <p>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p> <p>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 ----- <u>제5호부터 제9호</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5월 4일

남원시 조례 제 1885 호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국·소장, 기획실장,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

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청년 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1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희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시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제21조부터 제28조에 따른 특례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5월 4일

남원시 조례 제 1886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시행령 제2조”를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축분뇨”란”을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란”을 “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축사·운동장 그 밖의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을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서 연결하여 5가구(공동주택은 그 가구 수로 본다)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간 거리는 지적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9. “가구”란 「건축법」상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전기 및 수도시설 사용실적이 6월간 없는 빈집, 축사의 관리사는 제외한다.

10. “악취저감시설”이란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현대화”란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2.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거나,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 대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대제한 지역에서 기존에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면적 100% 이내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현대화하는 경우. 다만 기존 사육 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축종 변경은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 규정이 같거나 완화되는 축종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연도별 가축 사육 전망
4. 가축분뇨의 발생 예상량과 그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퇴비, 액비의 품질제고 및 농가 사용 확대 방안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
2.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
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7.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가축사육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축산악취 개선 명령 및 제재) ① 시장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축 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게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게 악취개선을 명령한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악취개선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가축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 대해서는 악취개선이 이행될 때까지 남원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제3조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동지역은 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충동 - 죽향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 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 이내의 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 금지 구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 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 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 인원 30명 이상 기업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아래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육우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젖소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 1,0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 2,000m 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업종을 말한다.

[별표 2]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제4조제2항 관련)

(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휼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섞은 사료를 급여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살포하여야 한다.		
축종	악취저감시설 기준	비고
소 [젓소·말·양(염소 등 산양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은 일체형으로 한다. 다만, 일체형이 아닐 경우 퇴비사는 윈치커튼 등을 설치하여 밀폐화하도록 하고, 악취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또는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처리시설 중 액비저장조의 경우 지하 밀폐화하고, 퇴비사는 밀폐화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중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산란계) ·메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은 무창축사이며, 바닥은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배출시설의 악취를 발생시키는 부분(강제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중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처리시설은 밀폐화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육계) ·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은 무창축사이어야 한다. 다만, 무창축사가 아닐 경우, 이중막시설이어야 하며, 좌우 측면에 자동개폐식 환기용 윈치커튼(2단)을 설치해야 한다. 배출시설의 악취를 발생시키는 부분(강제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중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처리시설은 밀폐화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은 방음벽이 있는 무창축사이며, 바닥은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처리시설은 밀폐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u>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로서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u></p> <p>2. “<u>가축분뇨</u>”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p> <p>3.·4. (생략)</p> <p>5. “<u>배출시설</u>”이란 가축사육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u>축사·운동장 그 밖의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u></p> <p>6. (생략)</p> <p>7. “<u>주거밀집지역</u>”이란 5세대</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 ----- -- <u>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u>----- ----- ----- ----- ----- ----- --.</p> <p>2. “<u>가축분뇨</u>”란 <u>법 제2조제2호에 따라</u> ----- ----- -----.</p> <p>3.·4. (현행과 같음)</p> <p>5. -----<u>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u> ----- <u>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u> -----.</p> <p>6. (현행과 같음)</p> <p>7. “<u>주거밀집지역</u>”이란 <u>가구 간</u></p>

현 행	개 정 안
<p><u>이상이 주민등록상 기록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 지적·임야도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로 한다.</u></p> <p>8.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거리가 100미터 이내에서 연결하여 5가구(공동주택은 그 가구 수로 본다)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간 거리는 지적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u></p> <p>8. (현행과 같음)</p> <p>9. <u>“가구”란 「건축법」상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전기 및 수도시설 사용실적이 6월간 없는 빈집, 축사의 관리사는 제외한다.</u></p> <p>10. <u>“악취저감시설”이란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11. <u>“현대화”란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u></p> <p>12. <u>“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u>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금지 지역과 상대 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그 구분은 별지와 같다.</u></p> <p>② <u>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u></p> <p>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1. ~ 5. (생략)</p>	<p><u>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u></p> <p>13. <u>“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거나,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법인 등을 말한다.</u></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u>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 대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u></p> <p>② <u>시장</u>----- ----- ----- ----- ----- ----- ----- ----- ----- -----.</p> <p>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6. 상대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 부지 면적의 증가 없이 기존의 배출시설을 개축하는 경우</p>	<p>6. 상대제한 지역에서 기존에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면적 100% 이내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현대화하는 경우. 다만 기존 사육 두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7. 삭 제</p>	
<p>8. (생 략) <신 설></p>	<p>8.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② 시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p>
<p><신 설></p>	<p>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축종 변경은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 규정이 같거나 완화되는 축종에 한하여 가능하다.</p>
<p><신 설></p>	<p>제8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신 설></p>	<p>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p>
<p><신 설></p>	<p>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현황</u></p> <p>3. 연도별 가축 사육 전망</p> <p>4. 가축분뇨의 발생 예상량과 그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p> <p>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p> <p>6. 퇴비, 액비의 품질제고 및 농가 사용 확대 방안</p> <p>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9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p> <p>2.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지원사업</p> <p>3.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p> <p>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p> <p>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p> <p>7.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가축사육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p> <p>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0조(축산악취 개선 명령 및 제재) ① 시장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축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게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게 악취개선을 명령한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악취개선 명령을 거</p>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u> (생 략)</p>	<p><u>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건축사 육자와 시설운영자에 대해서는 악취개선이 이행될 때까지 남원 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서 제외 조치를 할 수 있다.</u> <u>제11조</u> (현행 제8조와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5월 4일

남원시 조례 제 1887 호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 버스 정류장
- 2. 횡단보도
-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 4.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 12미터 이상인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2.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의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4.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 <p>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1.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p> <p>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p> <p>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p> <p>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p> <p>2.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p> <p>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축물 높이 12미터 이상인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p> <p>2.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의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p>

붙임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장*홍
	주소 남원시 봉당길 **
3. 의 견	○ 제10조제1호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상” → “건축물높이 12미터 이상” 으로 요망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3월 24일</p> <p>의견서 제출인 성 명 : 장*홍</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5월 4일

남원시 조례 제 1888 호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를 “이란 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를 “이란 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4조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농업인에 한하여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국가의 보 조·지원대상 농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농업인에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 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남원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남원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여”를 “피해지역 이·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를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미흡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따라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농업재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설해·동해·병충해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p> <p>2.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p> <p>4.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p>	<p>제2조(정의) ----- ----- -----.</p> <p>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p> <p>2. -----이란 법 제2조제10호----- -----.</p> <p>3. -----이란 법 제2조제4호----- -----.</p> <p>4. -----이란 「농업·농촌</p>

현 행	개 정 안
<p>· <u>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u>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5. “<u>재난지수</u>”라 함은 지원기준 <u>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u>를 말한다.</p> <p>제4조(지원대상) <u>남원시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u>에 한하여 「<u>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u>」 제2조에 의한 국가의 보조</p> <p>· <u>지원대상 농업재해</u>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u>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u>」 제9조에 해당되는 농업재해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2. (생략)</p> <p>3. <u>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남원시 이외의 지역에 거</u></p>	<p><u>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u>----- ----- ---</p> <p>5. “<u>재난지수</u>”란 「<u>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u>」 제3조제4호에 <u>해당되는 지수</u>를 말한다.</p> <p>제4조(지원대상)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u> ----- ----- <u>농업인에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u>」 제8조 제3항</p> <p>----- ----- ----- ----- ----- ----- ----- ----- -----</p> <p>---</p> <p>제5조(지원제외)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시</u> -----</p>

현 행	개 정 안
<p>주하는 자</p> <p>4. 5. (생 략)</p> <p>6. 그 밖에 <u>남원시장이</u>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p> <p>4. 5. (현행과 같음)</p> <p>6. ----- <u>시장</u>-----</p> <p>-----</p> <p>-----</p>
<p>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u>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u>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피해지역 이·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u>-----</p> <p>-----</p> <p>-----</p> <p>-----</p>
<p>③ (생 략)</p> <p>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u>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u>」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u>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u>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 「<u>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u>」-----</p> <p>-----</p> <p>-----</p> <p>-----</p> <p>-----</p> <p>-----</p> <p>-----</p> <p>----- <u>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미흡하</u>-----</p> <p>-----</p>

현 행	개 정 안
<p>여 지급한다.</p> <p>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p> <p>1.·2. (생 략)</p> <p>3.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p> <p>② -----</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p> <p>-----</p> <p>제11조(시행규칙) -----</p> <p>-- <u>필요한</u> -----</p> <p>-----.</p>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고시 제2023-61호

남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인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 /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3년 5월 4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가. 명 칭 :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 / 치매안심센터 증축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조산동 455번지

－ 사업의 규모 : 건축면적 4,140.99㎡ → 4,153.89㎡ (증 12.90㎡)

건축연면적 7,457.85㎡ → 8,364.14㎡ (증 906.2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교육체육과, 보건소)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편입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권리명	권리의 종류	
1	조산동	455	대	17,130	17,130	남원시				
합계				17,130	17,130					

남원시 공고 제2023-963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1-14호선)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1-14호선) 결정(변경) “안” 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4일
남 원 시 장

1. 도로(소로1-14호선)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4	10	집산 도로	403	중로1-2 왕정동 534-3	대로1-7 왕정동 577-7	일반 도로	만복사지 동측	전라북도고시 제1985-235호 (1985.12.29.)	
변경	소로	1	14	10	집산 도로	102	중로1-2 왕정동 554-2	소로3-140 왕정동 607	일반 도로	만복사지 동측		노선연장 단축
신설	소로	1	A	10	집산 도로	186	대로1-7 왕정동 577-14	소로3-140 왕정동 539-2	일반 도로	만복사지 서측	금 회	잔여구간 노선신설

○ 도로(소로1-14호선)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14	소로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단축 - L=403m→102m, 감)301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복사지 복원사업 시행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내를 경유하는 노선을 제척하여 문화재보호 및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금회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	소로1-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 신설 - B=10m - L=18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복사지 복원사업 시행에 따른 소로1-14호선 노선 중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내 경유 부분을 제척 후 잔여구간에 대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2. 공람 기간 : 2023. 5. 4. ~ 5. 19.(신문공고 다음날부터 15일간)
3. 공람 장소 및 주민 의견서 제출처 : 남원시 도시과(063-620-6454)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제출서 양식)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도서 : “실음생략” (관련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주민 등의 의견제출서

과업명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 : 소로1-14호선) 결정(변경)(안)	
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 534-3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2023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 공고 제2023-981호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남원시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소식지 게재사항, 발행 횟수, 규격 및 부수 규정 (안 제2조~안 제4조)

다. 소식지 자료 수집, 배부 대상 및 방법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라. 보상 등 규정 (안 제7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5. 3. ~ 2023. 5. 23.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홍보전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3), 이메일(hepbun2000@korea.k)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홍보전산과(☎063-620-6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안)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0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홍보전산과장

1. 제정이유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남원시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나. 소식지 게재사항, 발행 횟수, 규격 및 부수 규정 (안 제2조~안 제4조)
- 다. 소식지 자료 수집, 배부 대상 및 방법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 라. 보상 등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3. ~ 2023. 5. 23.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완료
 - 4) 성별영향평가: 완료
 - 4)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사항) 남원시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 관광, 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
4. 행정 공지 및 생활 정보,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에 관한 사항
5. 관내 기관·단체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발행 횟수)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자료수집)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시민 및 유관기관·단체, 출향인,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제6조(배부 대상 및 방법)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상 등) ①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이 소식지에 수집·게재한 원고에 대해서 일정액의 원고료·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식지에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 기관·단체의

-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료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남원시 공고 제2023 - 983호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시와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의 위탁 및 해지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마.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각종 행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 사.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원고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홍보전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홍보전산과)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3),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홍보전산과(전화 : 063-620-6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3 - 985호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시와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의 위탁 및 해지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마.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각종 행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 사.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원고료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홍보전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홍보전산과)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3),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홍보전산과(전화 : 063-620-6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홍보전산과장

1. 제정이유

남원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이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 나. SNS 개설 및 운영, 위탁, 게시물의 관리 규정(안 제3조~안 제6조)
- 다. 각종 행사의 운영, SNS 서포터즈 운영 규정 (안 제7조~안 제9조)
- 라. 원고료 등 지급, 포상 규정 (안 제10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3. ~ 2023. 5. 23.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평가:
 - 5) 부패영향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남원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남원시와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 · 부호 · 음성 · 음향 · 이미지 ·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남원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식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 문화 · 관광 · 예술 · 체육 · 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재난 · 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시민 의견·시정 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을 때
2. 수탁자가 SNS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SNS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6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완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3.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
4. 특정기관 ·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 · 음란물,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 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 ·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 활동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에 있다.

④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원고료 등 지급) ① 시장은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주민 ·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